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Н.	기	관	의	장	
선					·
람					

정기 제396호 2018. 4. 16(월)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18 - 337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 2018 - 378호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수	군 공고	제 2018 -	- 337호	장수군 트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	정 규칙역	안 입법예고	ਹ	
고 시	장수	군 공고	제 2018 -	- 378호	장수군 호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 제정	성안 입법	예고			
고 시													
± ~	г	77	М										
				_									

회				
람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228)

장수군 공고 제 2018-337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장수군수

- □ 자치법규명
-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 □ 개정이유
- 국내·외투자 및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를 정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동참을 유도,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규칙 제15조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같은 조례 "제23조"를 "제28 조"로 개정
-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신설

- □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군보게재 익일부터 20일간
- 예산수반여부 : 여
- □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건설경제과장)
 - 팩 스: 063-350-2327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경제과 지역경제팀 350-2243에 문의바랍니다.
-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일부개정안

제396호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자치법규안	찬 반 여 부		의	<u></u> 견	7-1	비고
내용	찬성	반대	7	<u>ئ</u>		H1 J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조례 제23조의"를 "조례 제28조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업유치 포상금 등 지급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1. 지급대상 및 투자금액별 인센티브 지원 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 대상	- 개인, 공무원, 법인·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구분	국내기업 등 투자규모별 지급기준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	개인 법인 단체	① 원화기준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투자금액×0.1% ②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지급계산식: 1천만원 + (투자금액-100억원)×0.05% ③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지급계산식: 3천만원 + (투자금액-500억원)×0.05% ④ 원화기준 1,000억원 이상 ~ - 지급계산식: 5천5백만원 + (투자금액-1,000억원)×0.04% (최고 1억원) ※ 단,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공무원	① 원화기준 20억원 이상 ~ : 투자액의 0.05% (최고 2천만원) ※ 단, 관련업무부서 공무원 제외						

2. 투자유치 기여도에 대한 포상금 차등 적용 기준

적 용 기 준	적용률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100%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70%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기업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와 공동으로 추진	5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30%

3. 지급방법

① 포상금 신청 : 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② 포상금 지급 :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결정 후 지급

③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산업단지분양대금 지원금은 제외)+시설투자비

④ 외국인 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신 · 구조문 대비표

1 7 7 1 7 L		개 정 안	현 행
제1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조례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및 기업 유치규모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8조 -	의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및 기업 유치규모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기업유치 포상금 등 지급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1. 지급대상 및 투자금액별 인센티브 지원 기준 구분 지급 기준 지급 - 개인, 공무원, 범인·단체 대상 - 범인·단체 : 회계업인, 법률사우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구분 지급기업 등 투자금액보 지급기준 이 원화기준 20억원 이상 - 100억원 이만 : 투자금액×0.1% (원화기준 10억원 이상 - 500억월 이만 : 투자금액×0.1% (원화기준 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만 : 투자금액×0.1% (원화기준 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만 : 구시급개선식 : 3천만원 + (투자금액-500억원)×0.05% (원화기준 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만 : 구시급개선식 : 3천만원 + (투자금액-1,00억원)×0.05% (원화기준 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안 - 시급개선식 : 5천5백만원 + (투자금액-1,00억원)×0.04% (최고 1억원) 과 단체 환 단,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참 공우원 (원화기준 20억원 이상 - : 투자액의 0.05% (최고 2천만원) 과 단, 관련업무부서 공우원 제외 2. 투자유치 기어도에 대한 포상금 처등 적용 기준 투자자 발로, 정보업수, 입지전용, 공장설립 등 기업유체 생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수전한 사용에 격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자자 발로, 정보업수, 입지전용, 공장설립 등 기업유체 생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수전 환경되었던 사용에 격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자자 발로, 정보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전 3. 지급방법 ① 포상금 신형 : 유치기업의 사업까시일로부터 1년 이내 ② 포상금 지급 :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급가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결정 후 지급 ③ 투자금액 = 토재액입비(산업단지본)양대급 지원금은 체외)+시설투자비 ④ 외국인 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사점의 완용로 환산하여 적용

장수군 공고 제 2018-378호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을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장수군수

□ 자치법규명

○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정이유

○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사전 심의 및 연구결과의 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점검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에 활용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장수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 원회」를 구성·운영 (안 제4조 내지 6조)
- 나. 학술연구용역 대상건이 발생되면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해당 용역의 적정성등을 평가하여 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 (안 제11조 및 제12조)

- 다.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토록 함 (안 제13조)
- 라. 연구결과의 평가(용역완료후 3개월 이내) 및 성과점검(매년)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토록 함 (안 제 14조 및 제16조)
- 마. 용역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안 제15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내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심사: 대상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
- 팩 스: 063-350-228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예산팀 350-2219에 문의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396호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 번호 :

자치법규안	찬 반 여 부		의	<u></u> 견	비고
내용	찬성	반대	7	٦ ا	비끄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학술연구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집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연구용역" 이란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학술·계획·조사·평가·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 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3. "총괄부서장"이란 장수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4. "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 2. 전액 국·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

- 3. 관계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 4 1천만원 이하의 학술연구용역
-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조(위원회의 구성) ①군수는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건설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3.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용역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 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제11조(심의요청)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및 통보) ①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 4. 기존 용역과 유사 · 중복성
-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②용역발주부서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용역실명제) 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 ②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③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연구결과의 평가) ①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용역결과의 관리) ①과제담당관은 용역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최종 성과물 2부와 원문수록 저장매체 1식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다

②총괄부서는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현황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심의번호 제 호

<제1면>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 예정 ○ 예산편성 S	금액 : 천 요구 예정사항	[원(국비	, 도비	, 군	'비)		
용 역 사업비	요구예정 시	기 회계	별	정책단위	편 /	성 목		
	20 년 당초예	산 일반회기	4					
	20 년 제 회	추경 이이특별	별회계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의	Ė,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하	기 기재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 ○ 수행방식 ·	□ 위탈형	그 공동연	ᅧ구형 □	자무형			
			_		, 2 0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기존 용역회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담당/	자 전	화	비고		
담당자 등								

)	<u></u>	<u> </u>	2010, 4,
			<제3면
	용 (역 명	
	0	7 0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0			
0			
□ 과업의 주요 나	용		
0			
0			
0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I		
0	•		
0			
□ 유사 용역사례((치그 5년가)		
	시		
0			
	!용계획과 기대효과		
	10계탁시 기대표되		
0			
	저 그 나 로마		
□ 예상되는 문제?	심과 내색		
0			
※ 첨부 : 과업지계	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년 월 일)

			님 의 결 고	ŀ		
우선순위	심의안건	원안가 결	조건부 승 인	부결	심사의견	비고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 재한다.

>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제396호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용역명 :						
용 역 개 요	○ 주요 내용						
	-						
	_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용역계약 용역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검일자 점검자 ○○담 당 과제담당관 비 고						
점 검자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_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점검결과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TETTON ME CEC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0						
	0						
	0						

[별지 제4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서

학술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	월)
주 요 연구결과				매우 우수				
평가항목		평가 의견			우수	보통	미흡	미 미 하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 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및 성명) :					
평가자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별지 제5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

(년 월 일)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0000.00.00~0000.00.00	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주요내용			
용역결과 활용현황 (자세히)			
용역활용 효과분석			
문제점 및 개선책			

장수군 고시 제2018 - 1호

제396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7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의거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4일

장수군수

1. 사업목적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 유통시설 간 농로를 확 · 포장

(단위: 천원)

	위치			사일	걸 <i>량</i>			
사업시행자	지구명	시군	읍면	리	들녁명	연장 (km)	\ ≼ (m)	비고
소계(장수군)	16지구							
장수군수	음선	장수	장수	선창	음선뜰	0.1	3.0	
장수군수	남동	장수	장수	두산	남동뜰	0.1	3.0	
장수군수	원개정	장수	장수	개정	개정들	0.3	3.0	
장수군수	구락	장수	장수	송천	구락들	0.3	3.0	
장수군수	초장	장수	산서	오산	초장뜰	0.3	3.0	
장수군수	진전	장수	산서	건지	진전뜰	0.3	3.0	
장수군수	평촌	장수	산서	마하	평촌뜰	0.1	3.0	
장수군수	원논곡	장수	번암	논곡	논곡들	0.1	3.0	
장수군수	원금곡	장수	장계	금곡	도랑들	0.4	3.0	
장수군수	운곡	장수	천천	삼고	가재들	0.4	3.0	
장수군수	고기	장수	계남	침곡	고기들	0.1	3.0	
장수군수	난평1	장수	계남	화양	난평들	0.1	3.0	
장수군수	난평2	장수	계남	화양	난평들	0.1	3.0	
장수군수	매계	장수	계북	매계	매계들	0.1	3.0	
장수군수	월현	장수	계북	월현	월현뜰	0.2	3.0	
장수군수	농소	장수	계북	농소	농소뜰	0.1	3.0	

3. 사업의 효과 :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4. 지형도면 : 실음생략

군보발행안내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